잠실 르엘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8.19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021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8.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5.08.19(화)	2025.08.29(금)	2025.09.01(월)	2025.09.02(화)	2025.09.03(수)	2025.09.09(화)	2025.09.10(수) ~ 2025.09.14(일) (5일간)	2025.09.22(월) ~ 2025.09.24(수) (3일간)

1 공통 유의사항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잠실 르엘"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ottecastle.co.kr)으로만 운영되며,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실 르엘"은 별도의 견본주택이 운영되지 않으며, 분양사업소 전화 상담만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00부터 오후 5:30까지이며 공휴일은 통화연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 예정이며, 공급계약 체결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지정한 계약장소에서 방문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 상 계약체결 장소 및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진행 일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잠실 르엘**"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상담전화(☎1551-021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 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외체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19(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2023.08.1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등기우편)	계약 체결 (※방문계약)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5.08.29(금)	25.09.01(월)	25.09.02(화)	25.09.03(수)	25.09.09(화)	25.09.10(수)~25.09.14(일) [5일간]	25.09.22(월)~25.09.24(수) [3일간]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르엘캐슬갤러리)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등기우편 접수 (*르엘캐슬갤러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자양동)	• **방문계약 (*르엘캐슬갤러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자양동)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업소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3항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2항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기간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5.09.09.**)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이나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급자, 수분양자 각 1/2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선택품목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25.06.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사업과 - 15739 (2025.08.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3개동, 총 1,865세대(조합 1,441세대, 임대/보류지 20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16세대
[특별공급 106세대(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4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53	01	045.9670	45	45.9670	21.7462	67.7132	45.3807	113.0939	22.7113	46	4	4	10	1	4	23	23	3
	02	051.9095	51	51.9095	24.3161	76.2256	51.2476	127.4732	25.5664	11	1	1	2	-	-	4	7	4
	03	059.8151B	59B	59.8151	23.6820	83.4971	59.0524	142.5495	28.0053	92	9	9	21	2	8	49	43	7
	04	074.2804B	74B	74.2804	26.1824	100.4628	73.3332	173.7960	33.6957	39	3	3	8	1	3	18	21	9
	05	074.5591C	74C	74.5591	26.0625	100.6216	73.6084	174.2300	33.7490	28	2	2	6	-	2	12	16	2
합계										216	19	19	47	4	17	106	110	25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x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대지지분은「주택법」 및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되,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약식표기)			45	51	59B	74B	7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1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	-	2
	장애인	서울특별시	-	-	2	1	1	4
		경기도	-	-	1	-	-	1
		인천광역시	-	-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1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2	1	5	2	1	11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2	-	4	1	1	8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	21	8	6	4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2	1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4	-	8	3	2	17
합계			23	4	49	18	12	10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분양가)	계약시	1회(30%) 2025.11.20.	2회(30%) 2025.12.19.	입주지정일
45	104동(1호) 107동(1,2,5,6,7호) 108동(7,8,9호)	2~3층	5	892,552,908	262,147,092	1,154,700,000	230,940,000	346,410,000	346,410,000	230,940,000
		4~5층	6	906,389,140	266,210,860	1,172,600,000	234,520,000	351,780,000	351,780,000	234,520,000
		6~10층	23	924,940,512	271,659,488	1,196,600,000	239,320,000	358,980,000	358,980,000	239,320,000
		11~13층	12	938,776,744	275,723,256	1,214,500,000	242,900,000	364,350,000	364,350,000	242,900,000
51	111동(5,6호) 112동(5,6호) 113동(1,4,5호)	2~3층	10	1,037,485,505	304,714,495	1,342,200,000	268,440,000	402,660,000	402,660,000	268,440,000
		4층	1	1,053,640,659	309,459,341	1,363,100,000	272,620,000	408,930,000	408,930,000	272,620,000
59B	108동(1,4호) 109동(1,4호) 111동(1,4호) 112동(1,4호)	2~3층	14	1,196,331,632	351,368,368	1,547,700,000	309,540,000	464,310,000	464,310,000	309,540,000
		4~5층	11	1,214,883,004	356,816,996	1,571,700,000	314,340,000	471,510,000	471,510,000	314,340,000
		6~10층	35	1,239,695,465	364,104,535	1,603,800,000	320,760,000	481,140,000	481,140,000	320,760,000
		11~15층	32	1,258,324,135	369,575,865	1,627,900,000	325,580,000	488,370,000	488,370,000	325,580,000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분양가)	계약시	1회(30%) 2025.11.20.	2회(30%) 2025.12.19.	입주지정일
74B	104동(2호)	2~3층	2	1,368,318,314	401,881,686	1,770,200,000	354,040,000	531,060,000	531,060,000	354,040,000
		4층	1	1,398,928,079	410,871,921	1,809,800,000	361,960,000	542,940,000	542,940,000	361,960,000
		5층	1	1,389,575,095	408,124,905	1,797,700,000	359,540,000	539,310,000	539,310,000	359,540,000
		6층	1	1,427,296,219	419,203,781	1,846,500,000	369,300,000	553,950,000	553,950,000	369,300,000
		7층	1	1,417,943,236	416,456,764	1,834,400,000	366,880,000	550,320,000	550,320,000	366,880,000
		8층	1	1,427,296,219	419,203,781	1,846,500,000	369,300,000	553,950,000	553,950,000	369,300,000
		9층	1	1,417,943,236	416,456,764	1,834,400,000	366,880,000	550,320,000	550,320,000	366,880,000
		10층	1	1,427,296,219	419,203,781	1,846,500,000	369,300,000	553,950,000	553,950,000	369,300,000
		11층	1	1,439,200,017	422,699,983	1,861,900,000	372,380,000	558,570,000	558,570,000	372,380,000
		12층	1	1,448,553,000	425,447,000	1,874,000,000	374,800,000	562,200,000	562,200,000	374,800,000
		13층	1	1,439,200,017	422,699,983	1,861,900,000	372,380,000	558,570,000	558,570,000	372,380,000
		14층	1	1,448,553,000	425,447,000	1,874,000,000	374,800,000	562,200,000	562,200,000	374,800,000
		15층	1	1,439,200,017	422,699,983	1,861,900,000	372,380,000	558,570,000	558,570,000	372,380,000
		16층	1	1,448,553,000	425,447,000	1,874,000,000	374,800,000	562,200,000	562,200,000	374,800,000
		17층	1	1,439,200,017	422,699,983	1,861,900,000	372,380,000	558,570,000	558,570,000	372,380,000
		18층	1	1,448,784,892	425,515,108	1,874,300,000	374,860,000	562,290,000	562,290,000	374,860,000
		19~26층	8	1,439,200,017	422,699,983	1,861,900,000	372,380,000	558,570,000	558,570,000	372,380,000
	109동(2호) 111동(2호) 112동(2호) 113동(2호)	2~3층	7	1,368,318,314	401,881,686	1,770,200,000	354,040,000	531,060,000	531,060,000	354,040,000
	109동(3호) 111동(3호) 112동(3호) 113동(3호)	2층	3	1,368,318,314	401,881,686	1,770,200,000	354,040,000	531,060,000	531,060,000	354,040,000
		3층	4	1,377,671,298	404,628,702	1,782,300,000	356,460,000	534,690,000	534,690,000	356,460,000
74C	107동(4호) 108동(6호)	2~3층	4	1,370,482,641	402,517,359	1,773,000,000	354,600,000	531,900,000	531,900,000	354,600,000
		4~5층	4	1,391,739,422	408,760,578	1,800,500,000	360,100,000	540,150,000	540,150,000	360,100,000
		6~10층	10	1,420,184,860	417,115,140	1,837,300,000	367,460,000	551,190,000	551,190,000	367,460,000
		11~15층	10	1,441,441,641	423,358,359	1,864,800,000	372,960,000	559,440,000	559,440,000	372,96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추첨 공급세대의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2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실시하며,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일반분양세대 중 주택형 74B타입은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로 104동 2호 라인 4층,6층,8층,10층,12층,14층,16층,18층 / 109동 3호 라인 3층 / 111동 3호 라인 3층 / 112동 3호 라인 3층 / 113동 3호라인 3층에 배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50%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table>
<tr><th>배점항목</th><th>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비고</th></tr>
<tr><th></th><th></th><th>기준</th><th>점수</th><th></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
*중복 선택 불가</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td></tr>
</table>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47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 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td></tr>
</tabl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① 세대주일 것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td></tr>
</table>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방법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8.29(금)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르엘 캐슬 갤러리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현장접수) 르엘 캐슬 갤러리, East동 4층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자양동)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9.01(월) 09:00~17:30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2025.09.02(화) 09:00~17:30		
	2순위		2025.09.03(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르엘 캐슬 갤러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안내**

<table>
<tr><th>구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 rowspan="3">• 일시 : 2025.09.09(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r>
<tr><td>2순위</td></tr>
</table>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09(화) ~ 2025.09.18(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0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09.10(수) ~ 2025.09.14(일), 10:00 ~ 17:30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5.09.10(수) ~ 2025.09.14(일)]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각 유형별 당첨자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특별공급 신청서 분양사업소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 분양사업소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O		인감도장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분양사업소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O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청약자'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해당 기관의 추천자 확인은 사업주체(분양사업소)에서 가능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O		배점기준표	본인	• 분양사업소 비치 ※ 배점검산용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분양사업소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 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O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가점검산용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의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 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당첨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위임장	본인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업소(르엘캐슬갤러리) 현장접수 시에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③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분양사업소 비치 ② 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구 분	해당 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직장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전원) 발급, ※미성년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 르엘 캐슬 갤러리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일본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O		인감 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구 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위임장	본인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분양사업소 또는 별도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현장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안내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전세대
추가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유상옵션 포함)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해당 세대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운영시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5.09.22(월) ~ 2025.09.24(수) [3일간]** **[방문 예약제] *추후 분양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	**10:00~17:00**	**•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계약시)**	**NH농협은행**	**301-0370-5663-61**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 (가상계좌)**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농협은행 301-0370-5672-71[예금주: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2002호 홍길동 : 1012002홍길동, 106동 204호 홍길동 : 1060204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 사항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확인증, 캡처 등)**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 **④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⑤ 정부수입인지 (※분양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각각 발급)**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분양사업소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사업소(르엘캐슬갤러리)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 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2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과 체결한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중도금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나머지 중도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전화상담 포함)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체결일,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당 아파트는 준공이 임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선택품목의 최초계약기간 외에 추가 및 변경 계약이 불가합니다.(계약서상 해제사유가 인정되는 해제 제외)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45	51	59B	74B	74C
발코니 확장 공사비		8,026,000	7,328,000	8,797,000	10,191,000	8,993,000
계약금 (10%)	계약시	802,600	732,800	879,700	1,019,100	899,300
잔금 (90%)	입주지정일	7,223,400	6,595,200	7,917,300	9,171,900	8,093,7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5년 7월말 기준 공정률 82.43%**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사업주체에게 발코니 비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심의에 따른 금액으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등의 증가비용을 감안하여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기타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45	전실(실내기 3대 : 거실, 침실1, 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LG전자 (공기청정형 적용)
51	전실(실내기 3대 : 거실, 침실1, 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59B	전실(실내기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200,000	820,000	7,380,000	
74B	전실(실내기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900,000	890,000	8,010,000	
74C	전실(실내기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900,000	890,000	8,010,000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주택형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여건 관계상 시스템에어컨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천정마감 내부에 유상옵션 설치를 위한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배관이 기본설치되며, 상기 공급금액은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465101-01-311954	롯데건설(주)
잔금	국민은행	465101-01-311967	롯데건설(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101동 506호 홍길동인 경우 '1010506홍길동')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판매 진행되며,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 미시행**

※본 아파트는 **2025년 7월말 현재 공정률 82.43%**로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10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홍보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 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분양사업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영상 등 홍보물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식재계획과 각 동 필로티 출입구, 문주 등이 추가 설치 또는 디자인, 색채,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등재된 자료에 표현된 단조경석, 옹벽, 난간 등은 사용자 편의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에는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표현과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에는 세대 내에서 보이는 외부 전경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모습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에 등재된 마감재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후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조경석, 부대복리시설,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 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하중의 기본 설계풍속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준공일정을 고려하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자, 시공사, 금융기관,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구분	내용
공통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함. • 본 계약은 '23.11.27. 사업시행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시행자"가 조합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분양사업소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관리비 부과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예정임.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실시공 현황,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준공도서 등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기반시설공사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보도는 준공 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재건축 소형주택은 택지 구분없이 계획 되었으며, 단지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재건축 소형주택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가 별도로 이행될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개방형 발코니 (별칭-OPEN 발코니)**

설치동	약식표기 (주택형)	정보	개방형발코니 설치 호수 및 위치
104동 (일반분양 기준)	74B	설치 호수	402호, 602호, 802호, 1002호, 1202호, 1402호, 1602호, 1802호
		설치 위치	거실 측창 전면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09동 (일반분양 기준)		설치 호수	303호
		설치 위치	거실 측창 전면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11동 (일반분양 기준)		설치 호수	303호
		설치 위치	거실 측창 전면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12동 (일반분양 기준)		설치 호수	303호
		설치 위치	거실 측창 전면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13동 (일반분양 기준)		설치 호수	303호
		설치 위치	거실 측창 전면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세대의 아래층은 개방형 발코니에 의해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개방형 발코니 호실 및 위치는 분양홈페이지 상 동호배치도 및 세대 평면도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발코니 설치 세대의 해당 호실 창호는 기본 세대와 창호의 규격 및 형태가 상이 하오니, 반드시 분양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고지사항

구분		내용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당 사업장은 잠실아파트지구 제3주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내 대상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고, 관련 인허가 변경에 따라 건축계획, 세부 사항 및 면적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당 사업구역 북동측에는 공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인허가 진행중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작한 것이며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구역 북동측에 설치 예정인 공원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세대에 소음 등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당 사업장 북동측의 공원 및 단지 주변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한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분양 이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지의 개발계획 (조경, 토목,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인허가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당 사업구역 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한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구역 대지 경계선 인근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구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구중심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 및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에는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휀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단지 외부와의 레벨차이에 따른 계획변경, 조경계획 및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단지 주변도로	단지 서측에 폭 25~35M도로(오금로)가 계획 되어있으며, 해당 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가 대지경계선 내측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대지경계선 외측으로 계획 되어있음.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북측에 폭 25M도로(올림픽로35길)가 계획 되어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가 대지경계선 내측으로 계획되어 있음.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동측에 폭 20M도로(올림픽로33길)가 계획 되어있으며,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 겸용 도로가 대지경계선 외측으로 계획되어 있음.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남측에 폭 50M도로(올림픽로)가 계획 되어있으며,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가 대지경계선 외측으로 계획되어 있음.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 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CG, 모형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단지 주변시설	단지 남서측에 위치한 잠실역 지하 연결통로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북동측에 기부채납 시설로서 공원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북동측에 설치될 기부채납 시설 공원의 경우 분양홍보물에 이해를 돕기위해 표현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사업주체의 시공범위로 개설시점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남서측 주구중심상가 인접경계면 지하구조물이 일부 매설되어 있으며, 향후 상가관련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남서측 주구중심상가 인근에 공공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공공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남서측에 주구중심상가가 위치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남서측에 위치한 주구중심상가는 공동주택 지하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인접 도로 하부에 도시철도 8호선이 운행(환기구 가동 포함)중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인접 도로 상부 고가철도에 2호선이 운행중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남서측에 위치한 테마파크 이용객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인접한 주동에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대지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당 사업장은 잠실아파트지구(고밀) 제3주구 전체 구역면적 75,684.50㎡ 중 북동측 공원 3,644.00㎡, 주변도로 4,130.50㎡를 기부채납하여 대지면적(사업부지) 67,910.00㎡로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으며, 해당 대지면적(사업부지)은 주택용지면적 63,541.00㎡과 주구중심용지면적 4,369.00㎡으로 구분됨.
	인허가	당 단지는 2017년 7월 최초 사업시행인가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당 사업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사항을 완화**받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당 사업장의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중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어르신복지센터,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는 지역개방 적용 대상 시설로써 단지 입주민 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의 경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고 발코니길이 삭제비율을 완화 받았음.
		공동주택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 심의의견 및 경관심의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장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전용 74타입(74A타입 및 74B타입에 한함), 84타입, 95타입, 106타입 및 126타입은 층수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변화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사이버모델하우스 VR로 59B㎡, 74B㎡ 타입을 구현하였으며, 실감도 높은 공간 연출과 실제 마감재를 반영한 고품질 CG로 제작되었음.
		VR로 구현된 세대와 실세대는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대칭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는 기본품목, 옵션품목, 전시품목이 혼합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홈페이지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함.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형을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음.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션 자료로, 청약 및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시공 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수급 불안, 제조사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되며,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마감 자재 등은 촬영 및 기록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마감재 사양, 옵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불가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와 다른 용량(규격)의 제품을 계약자가 설치할 경우,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가전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에 안내된 POP에 표기된 실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이며, 마감재 두께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수점 둘째 자리 절삭 기준)
		단위세대 현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단위세대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과 방화문으로 시공됨.
		단위세대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 통신·제어기기 등은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되거나 동급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용 조명기구는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단위세대 침실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관리가 용이한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단위세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위치와 사양 등이 상이함.
		단위세대에 안내된 우·오수 배관, 선홈통, 수전,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보안용 CCTV, 소화기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상세 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분양 홍보물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조경 식재, 단지 내 조경, 바닥포장, 어린이 놀이터 및 단지 문주 등 각종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분양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람.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람
		분양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또한, 분양 홍보물 상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명,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및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을 확인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기타사항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외관디자인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인허가 과정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주동 외관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균일한 무늬, 패턴, 색상, 베인으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자재의 균일한 무늬, 패턴, 색상, 베인이 아닌 자재 자체의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단지	공통사항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 DA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동의 동출입구 및 주동 저층부는 지정석재, 지정타일, 지정도장 마감 등 혼합마감이며, 일부 주동의 특정 구간에는 커튼월룩 등 특화입면이 적용될 수 있음. 커뮤니티시설의외부입면은지정석재,지정도장마감등혼합마감이며,주구중심상가의외부입면은지정석재,지정도장마감및커튼월등혼합마감임. 단,외관디자인변경으로인한인허가진행시외부입면마감은변경될수있으며재료의색상및디자인은시공중변경될수있음.
		필로티 내부에 기둥, 벽체 등은 지정석재, 지정도장, 지정타일, 지정금속 마감 등으로로 시공예정이며, 동별 여건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 및 부위별 마감재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좋은빛심의(자문)에 따라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램프), 동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방안전매트 구간과의 간섭, 소방차 등 각종 서비스 차량동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빛공해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102동 지상1층의 어린이집, 104동 및 105동 지상1층의 작은도서관, 107동 지상1층 및 108동 지상1층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109동의 어르신복지센터(경로당), 111동 및 112동 지상1층의 지역문화센터, 111동 지상1층 돌봄센터, 113동 지상1층 및 지상2층의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개방 적용 대상 시설물로서 임의로 폐쇄할 수 없음.
		단지내 외부엘리베이터는 105동 북서측 측벽에 인접하여 1개소, 108동 동측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의 저층부는 조망권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내 외부계단은 101동 북측 인접 1개소, 102동 북서측 1개소, 106동 북동측 측벽에 인접하여 1개소, 108동 동측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지붕층에는 고가수조가 존재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집광판.인버터), 공용TV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눈부심,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101동 및 102동에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에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본 단지는 소방 공사를 제외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Ⅶ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18(g)로 설계되어 있음. (내진 Ⅰ등급)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의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원패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일부 주동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 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태양광인버터 장비소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시설물 계획이 추가 계획 될 경우 이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발생됨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주차관제 출차주의,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일부 동 부대복리시설 상부 및 단지 남서측 주구중심상가옥상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상부는 거주자 이용이 불가한 공간이고,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이나 옥외사다리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인허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분진, 시야간섭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
		일부 동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지하1층에 101동, 103동, 104~105동 사이, 106동, 108동, 109동, 112동 하부에 총 7개소(근린생활시설용 별도 설치예정)가 설치될 예정이며, 재활용폐기물보관창고가 지하1층 108동 하부에 총 1개소(근린생활시설 별도 설치예정)가 설치될 예정임. 각 동출입구와 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재활용폐기물보관창고의 거리가 상이함. 세대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투입구외에 지상1층 외부공간에 지하로 이송되는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며, 이에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생활폐기물보관소의 위치, 규모 및 디자인은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해질 수 있음.
		단지내 조경시설물, 주차관제시스템,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탑라이트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폭, 경사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계획 등 전반적 조경계획은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공간(놀이터, 운동공간, 쓰레기분리수거함, 소방정차구간 등)의 위치는 크게 변경되지 않으나 그 외 공간별 규모, 형태,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와 무관한 일반 공간(휴게공간, 보행자전용동선 등)의 계획은 위치를 포함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의 개선안이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과 상충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소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수 있음
		공동주택 차량진입구와 연결되는 회차공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및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동의 저층세대에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공간 내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단,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유효고를 적용함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 및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음.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침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이므로 확장세대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각 주동 하부 지하1층에는 제연휀룸 및 동통신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주동 하부를 포함한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에는 지하주차장 휀룸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수 있음.
		각 동 인근 지상1층 및 각 동 하부 지상1층(필로티 포함)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이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위치한 D.A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그릴창호 주변 보행공간은 소음 및 열풍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건물 외관에 설치되는 LED 조명 등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관조명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동에 동일한 형태의 외관 및 경관조명이 설치가 될 수 없음을 양지하고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 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에 따라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옥상층 옥외안테나가 설치됨. 또한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옥상층 / B1F 휀룸5, 휀룸7, 휀룸17 / B2F 휀룸5, 휀룸7, 휀룸17, 주구중심상가 EPS 및 TPS / B3F 휀룸5, 휀룸7, 휀룸17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됨. 현장의 여건에 따라 안테나 및 중계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동지하 엘레베이터홀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및 동 하부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창호 및 금속마감, 조명형사인 등에 의해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 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 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상부는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임. 해당 녹화구간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준공 후 관리규약에 따르고, 옥상녹화, 인조잔디 등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월패드, CATV 등에서 확인가능한 단지내 놀이터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지상1층 음식물쓰레기 외부 투입구 위치는 104동 북측(1개소), 107동 남측(1개소), 109동 동측(1개소), 110동 동측(1개소)으로 총 4개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필로티	각 동별 지상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전체 동 지상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동출입구	각 동의 주동출입구는 1개층 필로티 또는 별도의 주동출입구가 설치됨.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
		일부 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및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
	문주	문주는 단지 동측 단지주출입구, 단지 북측 부출입구에 **경비실과 통합 게이트형**으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단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단지출입구	당 단지에 총 2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단지 동측 101~102동 사이, 단지 북측 112~113동 사이)가 있으며,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출입구와 출입 관제시스템의 일부 위치 및 형태,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단지 차량출입구는 2개소가 설치되며, 101동, 102동, 108동, 110동, 112동 및 113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공동주택 주동	당 사업장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및 113동의 전용 74타입(74A타입 및 74B타입에 한함), 84타입, 95타입, 106타입 및 126타입은 층수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변화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또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동 지상1층에는 DA(제연DA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동 하부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에는 세대창고실이 있으며, 세대창고는 세대당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각 동출입구와 세대창고실은 거리가 상이하며, 일부 세대창고실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일부 세대는 본인 세대가 포함된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세대창고실에 있는 세대창고가 배정될 수 있으며, 습기 등으로 인해 보관 물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별 세대창고 배정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동의 형태 및 동호수 조합에 따라 각 세대에서 인접세대로 시야, 조망 간섭, 소음 등 프라이버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임.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및 유리난간,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I 사인물은 104동, 111동, 113동 측벽에 각 1개소, 주구중심상가 2개소, 단지 문주 각 1개소, 스카이브릿지 상단 1개소에 적용될 예정임.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
		각 동에는 커튼월룩, 특화측벽, 측벽 경관조명이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 항목, 적용 위치 및 적용 개소 등은 각 동별로 상이함. 각 동에 적용되는 커튼월룩, 특화측벽, 측벽 경관조명에 의해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디자인, 색상, 재료 및 위치 등은 분양홍보물을 참조하되, 본시공 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 색상, 재료, 위치 등이 변돌 될 수 있음.
		일부 주 동 외부 입면에는 태양광 집광판(BIPV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 동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 집광판(PV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다리 등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 등 설비로 인해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음.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중 1개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측 5개층 마다 1개소씩(동별/ 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만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됨.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수 있음.
		101동 1호~2호라인 코어 및 101동 3호~4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1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01동 5호~7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3대(피난용 승강기 포함)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1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1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동 북측 지하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소화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 소화가스실 등이 설치되며, 101동 북측 및 북서측에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북측에는 지하3층 기계실 및 지하2층의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및 열교환기실과 연결되는 통로와 이어지는 계단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1동 북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북측 및 남측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북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동측에는 폭 2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동남측 및 서북측에는 단지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문주 조명,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특히, 101동 동남측에 위치한 단지 문주는 101동 2층 일부 세대의 전면에 위치하여 세대 전면 조망에 중대한 간섭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동 남측 및 서북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1동 남측 및 서북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남측 및 서북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1동 남측 및 서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1동 남서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남서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서북측 지하1층에는 음식물쓰레기기계실 및 배기용DA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1동 서북측 지하2층 및 지하3층에는 정화조 및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1동 옥탑지붕층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배기구 및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지상1층 필로티 일부 구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101동 3호라인의 전용 74A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동 4호라인의 전용 74A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동 5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동 6호라인의 전용 95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동 7호라인의 전용 10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1호~2호라인 코어 및 102동 3호~4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1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02동 5호~7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2동 동 하부 지상1층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북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2동 북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북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2동 북측 및 동남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2동 북동측에는 단지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문주 조명,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2동 동측에는 폭 2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남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2동 남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남서측 지하3층에는 기계실, 배수펌프실, 저수조,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남서측에서 서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서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옥탑지붕층에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지붕층에는 고가수조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2동 지상1층 필로티 일부 구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3호라인의 전용 84A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4호라인의 전용 84A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5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6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2동 7호라인의 전용 8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1호~2호라인 코어 및 103동 3호~4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1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03동 5호~7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3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3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북측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북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북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3동 동측에는 폭 2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남측 지하1층에는 연료전지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측 지하3층 및 지하2층에는 빗물재활용저수조 및 빗물재활용관리층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3동 남측 지상1층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3동 남측 지상1층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서측 **지상32층 및 33층 높이 인근에는 105동 스카이라운지, 106동 스카이라운지 및 해당 시설을 이어주는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빛공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특히, 103동 남서측 32층 높이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는 10동 고층부 세대의 전면에 위치하여 세대 저면 조망에 중대한 간섭을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남서측에는 스카이라운지 이용객 전용 전망형 엘리베이터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빛공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남서측에는 지하1층 관리사무소 및 지하2층 수영장과 연결되는 계단실과 지하2층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서측에는 주구중심상가 및 상가DA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서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
		103동 서측 지하3층에는 기계실, 배수펌프실, 저수조,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3동 남서측 지상1층에 DA가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서측에서 서북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서북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3호라인의 전용 84A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4호라인의 전용 84A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5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6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3동 7호라인의 전용 8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4동 코어는 2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4동 및 105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4동 동 하부 지상1층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북측 지하1층에는 연료전지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북측 지하3층 및 지하2층에는 빗물재활용저수조 및 빗물재활용관리층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3동 남측 지상1층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북측 및 서북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4동 동측에는 폭 20M 도로(단지 외 도로), 남측에는 폭 5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서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4동 서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서측에 위치한 **주구중심상가 옥탑지붕층에는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서북측 **지상32층 및 33층 높이 인근에는 105동 스카이라운지, 106동 스카이라운지 및 해당 시설을 이어주는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빛공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4동 서북측에는 스카이라운지 이용객 전용 전망형 엘리베이터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빛공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4동 서북측에는 지하1층 관리사무소 및 지하2층 수영장과 연결되는 계단실과 지하2층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2호라인의 전용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8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코어는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4동 및 105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동 하부 지상1층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동 하부 지상1층에는 부대시설의 공조설비 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세대에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북측, 북동측 및 서북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 남측에는 폭 5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남서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 및 열주형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 서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
		105동 서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 서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5동 서측에는 주구중심상가 및 상가DA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측에는 주구중심상가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서측에는 주구중심상가 선큰이 위치하여 주구중심상가 이용객이 해당 선큰의 계단을 통해 단지 지상1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측에 위치한 **주구중심상가 옥탑지붕층에는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북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북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북측에는 지하1층 관리사무소 및 지하2층 수영장과 연결되는 계단실과 지하2층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북측 지하3층에는 기계실, 배수펌프실, 저수조,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6동 동측으로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1호라인의 전용 10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2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2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3호라인의 전용 95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4호라인의 전용 10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5동 4호라인의 지상 32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스카이라운지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특히, 105동 지상 32층에는 해당 시설로 출입이 가능한 문이 설치되어 시설 이용객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105동 32층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 스카이라운지 이용객으로 인해 해당 시설 하부 층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 4호라인의 지상 32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하고, 지상1층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상1층 및 지상32층에 정차함. 이로 인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4호라인의 지상 31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전용 전망형 엘리베이터 관련 설비가 일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과 106동 사이 지상32층 및 33층 높이 인근에는 105동 스카이라운지와 106동 스카이라운지를 이어주는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빛공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5동 지붕층에는 건축법에 따라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코어는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6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6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6동 지상1층 필로티 일부 구간에는 MDF실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지상1층 필로티 일부 구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106동과 110동 사이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고, 특히 106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 부속실,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북측 지하3층에는 기계실, 배수펌프실, 저수조,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6동 동측 측벽으로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북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북동측에는 지하1층 관리사무소 및 지하2층 수영장과 연결되는 계단실과 지하2층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동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동남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동측 및 남서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남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
		106동 남측 및 남서측에는 주구중심상가 및 상가DA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주구중심상가 옥탑지붕층에는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남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남측에는 주구중심상가 선큰이 위치하여 주구중심상가 이용객이 해당 선큰의 계단을 통해 단지 지상1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남서측에는 주구중심상가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남서측 지상1층에는 주구중심상가 DA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남서측 지상1층에는 주구중심상가 생활폐기물 창고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6동 서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서북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1호라인의 전용 10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6동 2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6동 3호라인의 전용 95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6동 4호라인의 전용 10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6동 1호라인의 지상32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복층으로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스카이라운지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특히, 106동 지상 32층에는 해당 시설로 출입이 가능한 문이 설치되어 시설 이용객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106동 32층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스카이라운지 이용객으로 인해 해당 시설 하부 층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6동 지상32층 복층형 스카이라운지에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5동과 106동 사이 지상32층 및 33층 높이 인근에는 105동 스카이라운지와 106동 스카이라운지를 이어주는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시야 및 조망 간섭, 빛공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지상33층에는 최종 인허가 협의에 따라 스카이라운지의 비상시 피난을 위한 동선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106동 33층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해당 계획 관련하여 최종 인허가 협의에 따른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106동 지붕층에는 건축법에 따라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1호~2호라인 코어, 107동 3호~5호라인 코어 및 107동 6호~7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1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7동 동 하부 지상1층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북측 지하1층에는 재활용폐기물보관창고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북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7동 북동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해당시설의메인출입구로통행하는이용객으로인한소음,진동등환경권침해및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할수있음.
		107동 북동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북동측에는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로비와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지하2층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북동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동측 지하3층에는 기계실, 배수펌프실, 저수조,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6동 동측 측벽으로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동남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
		107동 남측 및 서북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7동 남측에는 주구중심상가 및 상가DA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남측에 위치한 **주구중심상가 옥탑지붕층에는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남동측에는 주구중심상가 선큰이 위치하여 주구중심상가 이용객이 해당 선큰의 계단을 통해 단지 지상1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남측에는 주구중심상가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남측 지상1층에는 주구중심상가 생활폐기물 창고가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서측에는 폭 약 25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서측부터 서북측에 이르는 구간(단지 외부)에는 지하철 2호선의 지상철도(고가철도) 구간이 위치하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서북측(단지 외부)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7동 서북측 지하3층과 지하2층에는 정화조 및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8동 1호~4호라인 코어는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되고, 108동 5호~7호라인 코어 및 108동 8호~9호라인 코어는 코어별 1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8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8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8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재활용폐기물보관창고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동 하부 지상1층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북측 및 남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북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북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북측에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북동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동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해당시설의 메인 출입구로 통행하는 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동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동측에는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로비와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지하2층 및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동남측 지하3층에는 기계실, 배수펌프실, 저수조, 공조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6동 동측 측벽으로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동남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남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남측 지하3층과 지하2층에는 정화조 및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남서측부터 서북측에 이르는 구간(단지 외부)에는 지하철 2호선의 지상철도(고가철도) 구간이 위치하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8동 서측(단지 외부)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간섭 등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8동 서측에는 폭 약 25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8동 서북측 지하3층 및 지하2층에는 빗물재활용저수조 및 빗물재활용관리층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상1층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2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8동 3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9동 1호~4호라인 코어는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되고, 109동 5호~6호라인 코어는 1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09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09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9동 동 하부 지하1층, 지하2층 및 지하3층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위치하며,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9동 동 하부 지상1층에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북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 및 열주형 문주가, 남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북측 및 북동측에 지역문화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북동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북동측 및 남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북동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북동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북동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9동 동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동남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해당시설의메인출입구로통행하는이용객으로인한소음,진동등환경권침해및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할수있음.
		109동 동남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남측 및 서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남측 지하3층 및 지하2층에는 빗물재활용저수조 및 빗물재활용관리층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08동 북측 지상1층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남서측부터 서북측에 이르는 구간(단지 외부)에는 지하철 2호선의 지상철도(고가철도) 구간이 위치하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남서측 단지 외부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일부 세대는 신호등 등에 의한 조망권 침해, 빛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9동 서측에는 폭 25~35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9동 2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9동 3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9동 지상1층 필로티에는 지하1층 환기를 위한 슬라브 오픈구간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9동 코어#1(5호 및 6호라인 코어)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단층형 로비로 다른 동의 코어들과 계획이 상이함.
		110동 코어는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포함)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10동 동 하부 지상1층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북측 지하1층에는 음식물쓰레기기계실 및 배기용DA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북측 지하2층 및 지하3층에는 정화조 및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북측 및 서북측에 지역문화센터(2개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북측 및 동남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북측 및 동남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북측 및 동남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북측 및 동남측에는 단지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문주 조명,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북서측 및 남서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북동측에는 지하3층 기계실 및 지하2층의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및 열교환기실과 연결되는 통로와 이어지는 계단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북동측 지하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소화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 소화가스실 등이 설치되며, 101동 북측 및 북서측에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북동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북동측 및 동남측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북동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동측 및 남서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님측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해당시설의메인출입구로통행하는이용객으로인한소음,진동등환경권침해및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할수있음.
		110동 남측 단지 중앙광장 주변으로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과 연결되는 계단실 및 옥외엘리베이터, D.A 및 실외기 설비, 수경시설 및 티하우스, 선큰 광장 등이 위치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남서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가, 서북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 및 열주형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0동 서측에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서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1호라인의 전용 12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0동 2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0동 3호라인의 전용 84C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0동 4호라인의 전용 106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15층 중 짝수 층에는 침실3 전면에, 홀수 층에는 침실2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0동 지붕층에는 건축법에 따라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1동 1호~4호라인 코어는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11동 5호~6호라인 코어는 1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11동 동 하부 지상1층 및 동측에 지역문화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지상1층 필로티 일부 구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111동 북측에는 폭 약 25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서측에는 폭 약 25~3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11동 남측에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남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 및 열주형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1동 동남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남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1동 동남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남서측부터 서북측에 이르는 구간(단지 외부)에는 지하철 2호선의 지상철도(고가철도) 구간이 위치하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1동 서북측 단지 외부에는 교차로가 있어 일부 세대는 신호등 등에 의한 조망권 침해, 빛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11동 2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1동 3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2동 1호~4호라인 코어는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12동 5호~6호라인 코어는 1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12동 동 하부 지하1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며, 112동 외의 다른 동의 세대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생활폐기물 보관소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2동 동 하부 지상1층 및 서측에 지역문화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지상1층 필로티 일부 구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해당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112동 북측에는 폭 약 25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동측에는 단지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문주 조명,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동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동측 지하1층에는 음식물쓰레기기계실 및 배기용DA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동측 지하2층 및 지하3층에는 정화조 및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동남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동남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동남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동남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동남측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동남측에는 지하3층 기계실 및 지하2층의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및 열교환기실과 연결되는 통로와 이어지는 계단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동남측 지하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소화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 소화가스실 등이 설치되며, 101동 북측 및 북서측에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남서측에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남서측에는 보행자 전용 단지 출입구 및 열주형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조명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남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남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동남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남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2동 2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2동 3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3동 1호~3호라인 코어는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12동 4호~5호라인 코어는 1대의 승강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름
		113동 동 하부 지상1층 및 지상2층에는 어린이집이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3동 북측에는 폭 약 25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13동 북측 지상1층에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3동 동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3동 남측 지하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소화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 소화가스실 등이 설치되며, 113동 남측에 DA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시야 및 조망 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3동 남측에는 지하3층 기계실 및 지하2층의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및 열교환기실과 연결되는 통로와 이어지는 계단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3동 남측 및 서측 지상1층에는 DA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3동 남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3동 남서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3동 서측 지하1층에는 음식물쓰레기기계실 및 배기용DA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3동 서측 지하2층 및 지하3층에는 정화조 및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3동 서측 지상1층에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3동 서측 및 남측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 및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3동 남서측에는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 출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3동 서측에는 단지 문주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문주 조명, 차량전조등 및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13동 2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짝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3동 3호라인의 전용 74B타입은 지상 3층에서 지상 20층 중 홀수 층에는 거실 측창 전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3동 지상2층에는 엘리베이터홀만 있는 층으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 법규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으로 정차하고 해당 층의 엘리베이터홀을 임의로 폐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무인택배	각 동별 지하1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
	주차장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에서 지하1층까지 총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1층에서 지하1층 지하주차장으로의 차량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 북측 112동과 113동 사이1개소와 단지 동측 101동과 102동 사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음.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내 지하램프는 총 4개소로, 단지 북측 4개동(101동, 110동, 112동, 113동) 사이 1개소, 단지 동측 101동과 102동 사이 1개소, 단지 남측 106동 남측 1개소 및 단지 서측 107동과 108동 사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램프를 통해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위치 및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각 동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가 지하주차장에 노출 설치되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 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음.
		각 동 지하층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되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일부 치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지하3층~지하1층) 휀룸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휀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수 있으며, 인접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음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 및 벽과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및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단지 특성상 주차장은 지하 3층~지하 1층까지, 주차대수는 총 2,852대 (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21개소, 완속 80개소로 총104개소 설치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145대를 별도로 계획하였음. 인허가 과정상 협의 의견 및 본공사시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충전대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 설치는 불가함.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 이상으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하부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차량통행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지하1층 지하주차장의 남서측에서 주구중심상가와 연결된 선큰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으며, 해당 통행로로 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접한 주차구역에 침수 등이 발생하여 주차 차량 오염 및 침수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해당 통행로 인근 지하주차장 설비배관의 동파, 빗물 유입 등의 피해에 대한 대비 목적으로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급시설	101동, 103동, 104동, 106~109동, 113동의 지하층에 물탱크실, 우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빗물이용시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가스,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스카이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 등)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면적,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용 출입구 및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에는 실외기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은 단지 동측 차량 주출입구, 단지 북측 차량 부출입구에 게이트형 문주와 통합형으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차량 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은 109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어린이집은 102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1개소, 113동 지상1층 필로티구간과 지상2층 일부에 복층형으로 1개소가 각각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관련 법령 및 지침,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되므로 입주일과 동시에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임. 다만,『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경우,『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관할지자체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본 협약의 효력은 자동으로 승계됨.
		다함께 돌봄센터는 111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본 시설물은 상위 법령, 행정계획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또는 용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인지 하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됨. 이에 따라 향후 본 시설의 위치, 용도,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고지함.
		작은도서관이 104동 및 105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심의 당시, 지역에 개방하여 공공성강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인정받은 시설로,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지역문화센터는 111동, 112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각각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지역공동체지원센터는 107동, 108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각각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단, 단지내 공공개방커뮤니티 등은 각종심의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운영방안이 결정됨)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심의 조건 및 인허가 시 공공개방조건으로 지정된 시설[작은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돌봄센터, 보육시설(어린이집1,어린이집2)]은 공공개방시설로 운영됨 (운영권은 인허가권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사항을 승계하여야 함), 또한 입주예정자는 커뮤니티 공공개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개방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적 제지가 따를 수 있음.(상세내용은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름)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커뮤니티 공공개방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관리사무소는 106동 하부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중 커뮤니티센터는 106동과 110동 사이 지하 1,2층에 설치되며, 지하1층에는 홀 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주민카페(다이닝카페), 관리사무소가 구성되고 지하2층에는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사우나(남,여), 코인세탁실 등으로 구성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각 시설들은 지하1, 2층 홀라운지를 통해 지하주차장과 동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접근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별도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민카페(다이닝카페)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주방시설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스카이커뮤니티(스카이라운지)는 105동 지상 32층에 1개소, 106동 지상32,33층에 복층형으로 1개소가 각각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105동측 지상1층에 접근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지상 32층과 106동 지상32층의 스카이커뮤니티(스카이라운지)는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브릿지로 인해 인접 주 동의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시야간섭 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게스트하우스는 110동 지상1층 필로티 구간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차량 주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설치됨.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차량 주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드랍존'(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 하시기 바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 어린이집,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연문화센터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 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및 보일러실은 추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동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열감,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스카이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 등)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커뮤니티 CG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용출입구,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세대에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 조망권,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접하여 주문주가 설치될 예정임. 단지 남측 및 서측 보행자출입구에 인접하여 가벽 열주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임. 해당 시설물로 인해 일부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시야간섭,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문주, 부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경비실이 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가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음
주택형별	**공통사항**	당 사업장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전용 74타입(74A타입 및 74B타입에 한함), 84타입, 95타입, 106타입 및 126타입의 경우 층수에 따라 발코니 변화가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침실-2 또는 침실-3 또는 거실에 위치하고, 이에 따라 그외 발코니 계획 및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별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는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단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세대와 하층부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수 있음.(법적면적은 동일함).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콘센트 등), 세대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은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수 있음.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45㎡, 51㎡,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C㎡, 95㎡, 106㎡, 126㎡, 134㎡, 145㎡ 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비상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가능하도록 계획함(피난기구는 상하층 좌우 교차 설치되어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동별 그 위치가 상이함).
		세대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당 단지의 기준층 세대의 거실, 침실의 천장고는 2,600mm, 욕실의 천장고는 2,500mm, 안방앞발코니 및 다용도실(낮은턱 기준)의 천장고는 2,810mm, 실외기실은 2,790mm로 계획하였으며,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방문을 닫을 경우 진동으로 초음파 현관센서등이 작동될 수 있는 경우 하자사유가 아님.
		실외기실 내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로 인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불연재료의 시설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실외기 유지관리(실외기 교체, 추가설치 및 A/S 등)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물 개방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펜트세대(전용 129A타입 및 129B타입) 및 복층세대(전용 134타입 및 145타입)에는 동형태 및 동호수 조합에 따라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펜트세대(전용 129A타입 및 129B타입) 및 복층세대(전용 134타입 및 145타입)의 테라스에는 옥상 의장구조물 기둥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및 시야간섭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펜트세대(전용 129A타입 및 129B타입) 및 복층세대(전용 134타입 및 145타입)의 테라스는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	각 단위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인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고정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됨.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각 동 최하층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
	단위세대 평면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 불가하오니, 계약 전 도면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7889
		타사 또는 당사의 다른 사업장과의 마감 사양을 비교하여,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추가 설치나 교체는 요구할 수 없음.
		공사 진행중에는 공종별 공사 방법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법의 선정 및 변경은 시공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약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다투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 향상 및 시공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중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에 비해 공간 및 제공품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함.
		기본 천장고는 거실, 침실 기준 2.6M이며, 공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바닥재에 따라 허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깊이·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및 구배,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으로 인해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현관·욕실·다용도실 등단차부는 바닥 구배 시공에 따라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의 물넘침 방지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는 무관함.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비난방 공간임.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 또는 조적벽 등) 접합부에는 크랙 방지를 위해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주택형별로 기본 제공 품목 및 옵션 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홍보물을 기준으로 함.
		개인이 시행한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외부의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함.
		전용 74타입, 84타입, 95타입, 106타입 및 126타입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특정 층수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마감재	단위세대의 마감재는 평형 및 타입별로 디자인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타입에 맞춰 시공되므로 별도 선택은 불가능함.
		제공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모델이더라도 조명, 각도, 시공 환경 등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이 달라 보일 수 있음.
		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 공장 생산 자재의 품질하자 여부는 KS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판단됨. 외관상 차이 또는 경미한 편차는 품질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석재, 목재 등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으로 공급이 어려우며, 품질 하자 여부는 KS기준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판단됨. 자연스러운 무늬 차이와 색상 편차는 하자로 간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마감자재의 두께는 자재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안목치수가 도면상 치수와 다를 수 있음.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음. 이는 공정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에 적용된 타일 마감의 나누기선 및 줄눈 위치는 형별·타입별로 상이하며, 본공사시 하자 예방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시공 위치와 개소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타일은 자재 고유의 물성으로 인해 소량의 휨(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세라믹 대형 아트월 타일은 자재 양중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세대 디자인에 맞춰 컷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 특성상 패턴과 색상, 줄눈 나누기 간격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방 상판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할 수 있음. 연결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강마루는 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한 패턴지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강마루는 스팀청소기나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해 장시간 수분에 노출될 경우, 표면재의 변형이나 하부 구조의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람.
		원목마루는 천연 소재로 수축· 팽창, 무늬 및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스팀청소기나 물걸레 사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람. 또한, 가구 이동 시 바닥 보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거실 우물천장의 몰딩 디자인 및 디테일(규격 포함)도 변경될 수 있음.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 바름 공법으로 시공되며, 테두리 및 매립박스 주위에만 접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부위에는 들뜬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법의 특성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78999
		창호 및 목창호의 형태, 위치, 열림방향은 본 공사 시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침실 및 욕실 도어 등 목창호의 프레임 사이즈, 단차, 형태 또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됨. 안전을 고려한 설계이므로 설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침실 내부에 적용된 SD도어는 도장마감, 공용공간(복도 등)에 적용된 SD도어는 인테리어 마감으로 시공됨. 공간에 따라 마감 방식이 상이함.
		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 도장 마감이 적용되는 부위의 벽체 하부에는 오염 방지를 위한 투명 도장이 시공되며, 해당 도장의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각 실의 도어 후면 상부에는 벽체와 하드웨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됨.
		도어의 열림 특성에 따라 벽체 및 하드웨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형 또는 바닥고정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됨.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 면)은 변경될 수 있음.
	가구	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세대의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내부 수납기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계약전 해당 세대의 가구 구성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는 옵션 품목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가구와는 구성 및 사양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기본형 및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시공, 전기 배선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므로, 설치 완료 후에는 이동이 불가함. (아일랜드 식탁 포함)
		가구의 마감·규격·구성은 인허가 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방지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의 실제 사이즈는 마감재,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인해 도면상 치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 바닥, 배면 등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음.
		가구 하드웨어 및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구문짝의 개폐방향은 입주자의 편의성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음. 이는 공정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방지를 위해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알칼리·산성 세제 사용 금지)
		욕실 거울은 자재 특성상(은 성분 포함) 산성 또는 알칼리성 세제나 습기에 민감하여 변색이 발생할 수 있음.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 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시공 여건 및 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구, 전기 및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공간은 구조적 또는 설치 여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가구 내부 구성은 본 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점검구 설치 및 안정기 매립 등을 위해 일부 공간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냉장고장 규격은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하부장의 뒷판 상·하단 엣지면은 마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정상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방 상판에는 별도의 물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재 및 구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을 따라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다른 상부장에 비해 깊이가 다르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렌지후드가 설치되는 상부장 내부에는 주방 자동식 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해당 공간의 수납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 설비임.
		온수분배기는 싱크볼 하부에 노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의 수납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온수분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싱크장 내부에 설치되는 가림판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음.
		팬트리 등 공틀로 구성된 가구의 상부에는 환기 겸용 도어 스토퍼가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상부 이격설치가 기준임
		기본형 및 옵션 선택 포함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은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싱크볼은 재질 특성상 스크래치나 수분 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물체나 고온 조리기구 사용은 피하고, 강한 산성·알칼리성 세제 대신 중성세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세척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 부위는 시공 여건 및 마감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유무, 크기, 수량,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은 가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침실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관리가 용이한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단위세대 천장고가 높음에 따라 냉장고 상부장 등 키큰장 사용 시 손이 닿지 않아 수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창호	주택형별로 창호사 및 창호브랜드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주택형별로 외부 창호의 형태 및 색상 등 디자인, 창틀 및 프레임 등의 세부 치수, 유리두께 등 각종 사양, 방충망 개폐방식, 손잡이 종류 및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방충망 개폐방식 등의 창호사양과 로이코팅 적용부요, 공기층 종류 등의 세부스펙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계획 및 실시공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별, 주택형별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는 상이할 수 있음.
		내/외부 창호의 프레임 외부면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이며, 실시공 과정에서 세부 도장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세대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방화용자동루버로 설치되며, 자동루버의 개폐 작동 및 구동 방식 등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동루버 컨트롤러 설치 위치 등은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실외기실 루버창 컨트롤러 위치를 참조하고, 본 공사시 사양, 위치, 디자인 몇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구간의 창호는 PVC 조망형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이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사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 (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 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바닥 마감기준 1,200MM이며, 설치제품, 발코니 확장 유무 및 일부 시공오차에 따라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비확장 발코니가 있는 침실1(안방)의 경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창호는 조망형단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으로 설치됨.
		창호는 미닫이(Sliding) 창호이며,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현관문은 동일 주택형별이더라도 열림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경우 적법한 결로 및 단열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환기 및 실내습도 관리 소홀로 인한 결로발생의 경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 공간임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등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부스바닥,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일부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욕실 세면대, 양변기, 다용도실 수전,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예방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세대 화장실 배관의 경우 층상배관으로 설치되어 추후 유지 및 보수 시 하부층 천장이 아닌 해당층 바닥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음.
		당 사업장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역난방)으로 별도 난방기 설치가 불가하며, 별도 개별 난방기 설치에 의한 훼손 및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음.
		드레스룸 및 펜트리가 설치되는 세대는 온도조절기가 설치 되지 않으며 인근 방 및 거실의 온도조절기와 연동되어 조절됨.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장비설치로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렌지후드는 상부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또한다용도실에는가스배관과계량기가노출설치되며,위치,형태,크기등은변경될수있음.

		일부 세대의 경우 아일랜드 식탁에 쿡탑이 설치되어, 아일랜드 식탁 상부로 렌지후드가 노출되고, 아일랜드 식탁 이용시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쿡탑 하부장에 설치됨.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매립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용 배관만 시공됨.
		세대 내 천장속 배관 및 덕트 설치 등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커뮤니티센터,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 및 주구중심상가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져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상세 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사양 및 수전 높이,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 단차 및 가구 형태·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실제 시공 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
		일부 구간에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며, 해당 발코니에는 외부 샷시를 설치할 수 없음.
		개방형 발코니에는 유리난간대가 설치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난간대 떨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개방형 발코니는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배수 등을 위해 배수입상관이 아닌 바닥면에 인접하여 발코니 하부턱에 배수구가 설치되며, 세대 내부로 물넘침 등 방지를 위해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입주민의 관리가 필요함. 해당 발코니 배수구 주변으로 외부 입면 변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개방형 발코니의 배수는 배수구를 통해 외부로 직접 배수됨. 개방형 발코니 하부 세대 및 지상 1층의 보행자는 개방형 발코니 낙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개방형 발코니 배수구에 고드름이 맺혀 하부로 낙하할 수 있음.
공동주택 외	**주구 중심상가**	단지 남서측에는 별도 획지로 주구중심상가가 위치하며, 주구중심상가 북측으로 106동 및 107동, 동측으로 105동이 인접해 있음. 주구중심상가와 인접한 주 동의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냄새, 시야간섭 등 프라이버시 침해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의 실외기 및 탈취설비는 주구중심상가 지붕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악취, 시야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실외기 및 탈취 설비는 추후 실공사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 지붕층 및 옥탑 등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집광판.인버터), 공용TV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눈부심,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 설비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주구중심상가를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 후면에 위치한 공동주택 일부 동은 주구중심상가 건물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 지붕층은 인허가시 상가 입점사 직원 또는 단지 입주민 외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으로 계획되어,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일부 동의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 지하1층과 공동주택 지하1층은 썬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은 주구중심상가 이용객 등 공동주택 입주민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음.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에는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과 분리 계획되었으며, 상호간에 차량 통행이 불가함.
		주구중심상가 서북측에는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전용 차량 진출입구와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주구중심상가의 북측에는 상가 전용 생활폐기물 창고가 위치하여 일부세대 및 인접 동은 소음,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2021. 2. 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어르신복지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B1F: 홀 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주민카페(다이닝카페), 관리사무소, B2F: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사우나(남,여), 코인세탁실 / 105동 32F 및 106동 32~33F: 스카이커뮤니티 / 110동 1F : 게스트하우스 / 주출입구 : 키즈스테이션 등)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주차장 주행통로 및 주차구획 구분없이 지하1층 높이 2.7m, 지하2층~지하3층 높이 2.3M로 설계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차량진입은 단지 북측 112동~113동 사이 1개소, 단지 동측 101동~102동 사이 1개소로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10,750,903,890	211-86-20779
전기	태양기술단㈜	1,449,832,440	314-81-93464
소방 / 통신	상지이앤씨주식회사	1,584,829,400	215-86-1278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제1항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항목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262,203,420,128	37,447,842,000	15,034,539,170	863,412,372	330,668,568	2,424,902,832	20,909,043,660	339,213,828,730

2)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택지비 가산비	**합계**	39,771,541,170	
	말뚝박기 공사비	96,910,07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암석지반 공사비	560,006,34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3,273,637,41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도로 및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19,118,255,27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철거 및 이설비	1,729,000,31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1,057,661,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정비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	9,122,267,00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관련 기타경비	4,813,803,74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비 가산비	**합계**	20,909,043,660	
	구조가산비	2,339,809,52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른 가산비	2,152,392,69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정 초과 복리시설 공사비	1,805,837,74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 공사비	8,758,315,24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 수수료	172,747,86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사비	215,694,8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공사비	198,979,43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개정에 의한 가산비	5,265,266,35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기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

(단위 : 원)

구분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	산술평균
감정평가금액	2,268,413,700,000	2,319,246,500,000	2,293,830,100,000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적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Ⅶ-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0.218(g)	MMI Ⅶ등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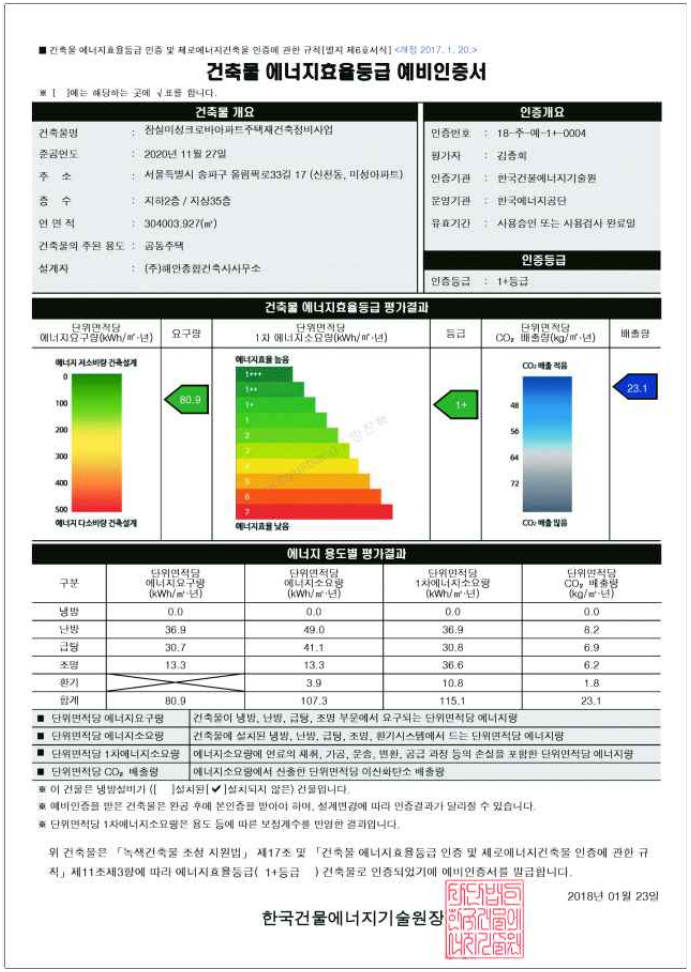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증번호	: 18-주-예-1+-0004
준공연도	: 2020년 11월 27일	평가자	: 김종희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 (신천동, 미성아파트)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35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304003.927(㎡)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설계	80.9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 CO_2 배출 많음	23.1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6.9	49.0	36.9	8.2
급탕	30.7	41.1	30.8	6.9
조명	13.3	13.3	36.6	6.2
환기		3.9	10.8	1.8
합계	80.9	107.3	115.1	23.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1월 23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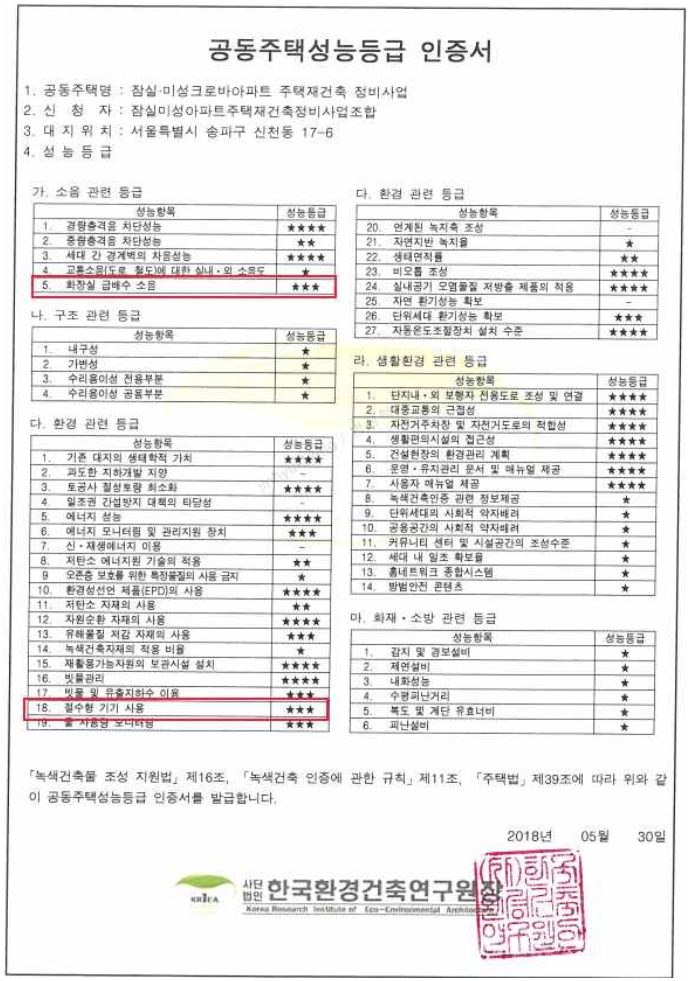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신 청 자 : 잠실미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증번호	: KRI-18-1020
건 축 주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유효기간	: 2018. 05. 30.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층 수	: 지하2층, 지상35층		
연 면 적	: 304,003.92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 계 자	: (주)해안종합 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69%
에너지 및 환경오염 75%
재료 및 자원 76%
물순환관리 87%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47%
실내환경 77%
0% 20% 40% 60% 80% 100%

종합등급 ★ ★ ★ ★

2018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사업약정 관련

- 사업주체(시행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사업주체의 분양대금 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합니다.
- 사업주체(시행사)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5-101-0003300 호	271,371,0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관련

①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합니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②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 9층 (방이동, 제이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법인등록번호	244271-0008239	110111-0014764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잠실 르엘 홈페이지 (https://www.lottecastle.co.kr)**
■ **서류제출(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56, 르엘캐슬갤러리 East동 4층**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분양문의 : 1551-0216 (잠실 르엘 분양사업소)**